

# 신뢰성혁신센터 운영 규정

□ 제정 : 2003. 04. 01

□ 개정 : 2004. 04. 14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 및 소재지) 본 센터는 수원대 신뢰성혁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(Reliability Innovation Center : RIC)라 칭하며 수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내에 둔다.

제2조(설치목적) 본 센터는 글로벌 시대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신뢰성표준을 개발하여 보급·확산함으로써 신뢰성 표준화기반을 구축하고,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신뢰성기술력과 제품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본 센터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신뢰성 표준 매뉴얼 개발 및 보급
2. 신뢰성표준 정보화
3. 산·학·연 신뢰성 공동연구 및 교육·훈련
4. 기타 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

## 제2장 조직 및 임원

제4조(소장)

1. 본 센터에는 소장 1인을 두며, 소장은 본교의 부교수 이상인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2. 소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인사, 재정, 관리 등 기타 일체의 운영업무를 총괄하고,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본교 총장에게 업무보고 한다.
3. 소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조직)

1. 본 센터에는 기획운영부, 기술정보사업부, 표준연구개발부 및 산학연협력부를 설치하며 각 부에 부서장을 둔다.
  - 가. 기획운영부에는 기획부, 운영부, 홍보부를 둔다.
  - 나. 기술정보사업부에는 교육훈련부, 신뢰성정보화추진부를 둔다.
  - 다. 표준연구개발부에는 표준개발부, 표준보급확산부를 둔다.
2. 소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부서를 추가할 수 있다.
3. 본 센터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, 자문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.

제6조(임원)

1. 각 부서의 부서장은 본교 전임교수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2. 각 부서장은 소장과의 협의하여 업무를 관장한다.

3. 소장 유고시 기획운영부서장, 기술정보사업부서장, 표준연구개발부서장, 산학협력부서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직원)(<개정 2004. 4. 14>)

1. 본 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교수, 위촉연구원, 행정직원, 부서조교를 둘 수 있다.
  - 가. 연구교수는 본 센터에서 수행하는 산학공동연구 등 기술개발연구에 참여할 자로서 소장이 임명한다. (<본항신설 2004. 4. 14>)
  - 나. 위촉연구원은 석사 이상의 학력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연구원으로 소장이 임명한다.(<본항신설 2004. 4. 14>)
  - 다. 행정직원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로서 소장이 임명한다.
  - 라. 부서조교는 필요에 따라 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장이 임명한다.
2. 직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.
3.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본교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# 제3장 운영위원회

제8조(운영위원회)

1. 본 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2. 위원회는 소장이 위원장이 되고, 소장, 각 부서장 및 소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3.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4.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5.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.
  - 가. 센터의 기본사업 및 제반운영에 관한 심의 및 의사결정
  - 나. 부서간 업무분담 및 협력사항
  - 다. 자문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 대한 후속조치
  - 라. 기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

### 제4장 자문위원회

제9조(자문위원회)

1. 본 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2. 자문위원회는 소장이 위원장이 되고, 소장이 위촉하는 교내외 인사 중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.
3. 자문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4.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5. 자문위원회는 센터의 제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.

## 제5장 자체평가위원회

### 제 10조(자체평가위원회)

1. 본 센터의 사업을 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.
2. 자체평가위원회는 소장이 위원장이 되고, 소장이 위촉하는 교내 인사 중 10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.
3.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4. 자체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5. 자체평가위원회는 센터의 제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평가를 한다.

## 제6장 재 정

### 제11조(재원) 본 센터는 다음의 재원으로 운영된다.

1.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출연금
2. 본교 출연 현물
3. 연구사업 수입금
4. 기타 수입금

### 제12조(회계년도) 본 센터의 회계년도는 당해년도 2월 1일부터 익년 1월 말일까지로 한다. 단, 본 센터의 1차 회계년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1월 말일까지로 한다.

### 제13조(예산의 운영·관리·결산)

1. 본 센터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한다.
2. 산업자원부 지원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다.

### 제14조(운영세칙) 기타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